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단5208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8.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2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 1) 주식회사 D은 C에게 2018. 10. 25.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19,000,000원 및 2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C은 원리금 상환을 제 때에 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주식회사 D은 2020. 2. 28. 전항의 각 대여원리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20. 7. 23. 위 채권양도를 C에게 통지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 1) C의 아버지인 E은 201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아들인 F, C이 있었다.
 - 2) F, C과 피고는 2019. 8. 1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7분의 2인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9. 8.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C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무렵 시가는 170,000,000원이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0,000원, 15,4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각 2019. 11. 25., 2019. 10. 21.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천세무서, 여주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처분할 당시에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채무자인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7분의 2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하여 왔으며 피고로서는 C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C의 상속지분인 7분의 2에 해당하는 48,571,428원($170,000,000 \times 2/7$)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5,6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별지